



제 438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전통주 및 지역특산주의 정의 정비 등 〉
■ 어기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9949호)

2026. 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 정 은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전통주 및 지역특산주의 정의 정비	2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전통주”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8
IV . 입법의 재정영향	11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어기구의원 등 10인
2. 발 의 일 : 2025. 7. 14.
3. 회 부 일 : 2025. 7. 15.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통주 등을 전통주와 예로부터 전승되어 오는 원리를 계승·발전시켜 진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 술로 정의하고, 전통주에는 식품명인과 무형문화재가 국산 농산물로 만든 술(민속주)과 농업인이 지역의 농산물로 만든 술인 지역특산주를 포함하여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대다수의 국민이 전통주로 인식하고 있는 탁주, 약주, 증류식소주의 상당수가 전통주에서 배제되는 반면, 전통성과는 무관한 지역특산주는 전통주에 포함되고 있어 전통주 관련 법령·정책과 국민의 현실 인식 간에 괴리가 큰 것으로 나타남.

이에 전통주 등이라는 불분명한 용어를 정비하고 예로부터 전승되어 오는 원리를 계승·발전시킨 술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술을 전통주로 포함하며, 지역특산주를 전통주와 구분하여 대등하게 규정함으로써 전통주에 대한 법적 정의가 국민적 인식에 부합하도록 하여 전통주와 지역특산주의 진흥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8조의2 등).

Ⅲ. 검토의견

1. 전통주 및 지역특산주의 정의 정비

개정안은 ① 전통주의 정의에 “국내에서 제조되고 예로부터 전승되어 오는 원리를 계승·발전시켜 진흥이 필요하다고 농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술”을 포함하고, ② 지역특산주를 전통주에서 분리하여 별도로 정의하며, ③ “전통주 등”의 개념을 삭제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정의	내용	정의	내용
전통주	○ 무형유산보유자 제조 ○ 대한민국식품명인 제조	전통주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현행 “전통주 등”에서 이동> ○ <u>국내에서 제조되고 예로부터 전승되어 오는 원리를 계승·발전시켜 진흥이 필요하다고 농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술</u>
	○ 지역특산주 - 농어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가 직접생산, 관할·인접지역 생산 농산물을 주원료로 제조	<별도 정의> <u>지역 특산주</u>	○ 농어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가 직접생산, 관할·인접지역 생산 농산물을 주원료로 제조
전통주 등	○ 전통주 ○ <u>예로부터 전승되어 오는 원리를 계승·발전시켜 진흥이 필요하다고 농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술</u>	<삭 제>	

※조문대비표 12p 참조

현행법¹⁾에 따르면 “전통주”는 ① 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대한민국 식품명인이 제조한 민속주와 ② 직접생산 또는 관할·인접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주원료로 제조하는 지역특산주를 의미함.

현재, “전통주”는 주 원료의 국산농산물 사용이 의무적이고 「주세법」에 따른 주세 50% 감면, 용기·포장 대금 과세표준 공제의 세제 혜택과 온라인판매 허용 등의 혜택이 부여되고 있음.

[전통주의 세제 혜택 등]

내용			기준	발효주류	증류주류
주세 감면 (일정 물량) 「주세법」 제8조제3항	감면 요건 (신규 면허자는 제한 없음)		전년도 생산량	1,000kℓ 이하 제조	500kℓ 이하 제조
	내 용	50% 감면	금년도 생산량	~200kℓ이하 반출	~100kℓ이하 반출
		30% 감면		200초과~400kℓ 이하 반출	100초과~200kℓ 이하 반출
과세표준 공제 「주세법」제7조제3항			○ 전통주에 사용되는 모든 용기 대금과 포장비용 공제		
온라인 판매 허용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4조			○ 전통주는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사이버몰(인터넷)과 휴대 전화 앱(app)을 이용한 통신판매 허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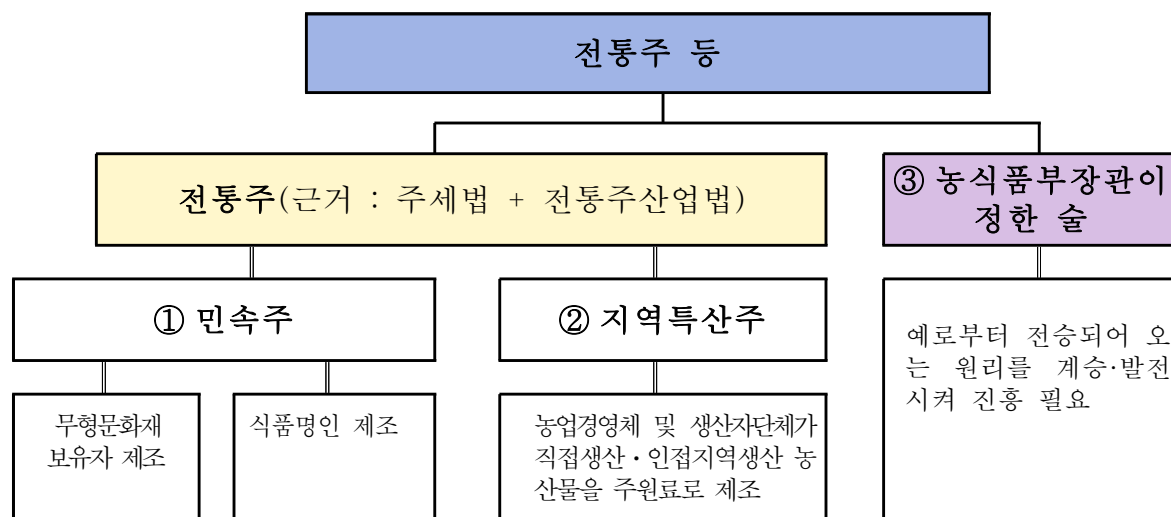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 재구성

- 1)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전통주”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술을 말한다.
 - 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주류부문의 국가무형유산 또는 시·도무형유산의 보유자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면허를 받아 제조한 술
 - 나.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주류부문의 대한민국식품명인이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면허를 받아 제조한 술
 - 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어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가 직접 생산하거나 제조장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인접 특별자치시·시·군·구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제조한 술로서 제8조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제조면허 추천을 받아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면허를 받아 제조한 술(이하 “지역특산주”라 한다)
3. “전통주 등”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술을 말한다.
 - 가. 전통주
 - 나. 예로부터 전승되어 오는 원리를 계승·발전시켜 진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 술

한편, “전통주 등”은 상기 전통주에 더해, ③ 예로부터 전승되어 오는 원리를 계승·발전시켜 진흥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술을 포함하는 개념임.

“전통주 등”으로 추가되는 술은 고시·공고 등을 통해 지정·관리 되지는 않고 사업별 필요에 따라 포함되는 개념으로, 원료농산물 사용에 제한이 없으며 “전통주”는 아니므로 「주세법」에 따른 혜택은 받지 않지만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전통주산업법”)의 진흥대상²⁾에 포함됨.

【 전통주 등 체계도 】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 식품외식산업과('25.6.5 제출)

그런데, 전통주는 사전적인 의미로 “한 나라나 지역 등에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양조법으로 만든 술”로 정의되고 있는데,³⁾ 국민적 인식에는 전통주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는 주류임에도 현행법의 정의에 따르면 제조자격 및 주원료의 원산지에 따라 전통주에 해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2) 경영개선 지원, 교육훈련, 홍보 지원 등

3)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반면, 전통성과는 연관성이 낮은 지역특산주가 “전통주”에 포함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통주 제조면허의 대부분⁴⁾을 차지하는 상황임.

【 「전통주산업법」의 전통주 요건 】

구분	상세내용	전통주 포함 여부
제조 자격	일반주류회사 (예시: <u>주류회사 제조 막걸리</u>)	×
	무형유산보유자, 식품명인, 지역특산주 제조자로서 주류제조면허를 받은 경우	○ (다른요건도 모두 만족하는 경우)
주원료 원산지	수입산 농산물 (예시: <u>수입쌀로 제조한 막걸리</u>)	×
	국내산 농산물	○ (다른요건도 모두 만족하는 경우)

일례로, 국가유산청은 막걸리가 우리나라 전통 발효음식이자 우리만의 고유성을 가진 문화적 자산인 점을 이유로 “막걸리 빚기”를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⁵⁾하였음. 그럼에도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대부분의 막걸리는 일반주류회사가 제조하였거나, 수입산쌀을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현행 법상 “전통주”로 인정받지 못하여 “전통주 등”에만 포함되고 있음.

4) 전통주 제조면허 2,112개 중 지역특산주 2,075개(2025년 기준, KOSIS 국가데이터처)

5) 국가무형문화재 제144호(2021. 6. 지정)

<지정 사유>

- 막걸리는 쌀 등의 곡물과 누룩, 물로 빚는 우리 고유의 술로서 삼국시대 이전 농경이 이루어진 시기부터 빚었을 것으로 추정됨. 고려시대 선비의 문집(文集) 등에서 ‘막걸리’로 추측되는 기록이 확인되며, 조선시대 ‘규합총서’, ‘음식디미방’ 등의 조리서류에서 막걸리의 제조 방법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음. 또한 당대 한글 소설 등에서 막걸리의 한글 표현이 확인됨.
- 막걸리는 김치·된장과 같이 일반 가정에서 직접 만들어 먹던 우리나라 전통 발효음식 중의 한 가지로 볼 수 있음. 특히 과거 농경사회에서 막걸리는 농사꾼에게 대접하는 농주(農酒) 형태로 즐겨 마셨으며, 식사와 함께 막걸리는 일꾼들의 땀과 갈증을 씻어 주고 힘든 농사일의 능률을 높이며 구성원과의 유대감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하였음. 막걸리는 한국의 식문화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연구 주제이자, 우리만의 고유성을 가진 문화적 자산임. (이하 생략)

이에 개정안은 전통주 및 지역특산주의 개념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법적 정의와 국민적 인식 간의 정합성을 제고하고 우리 술 산업의 진흥대상을 그 특색에 따라 구분하여 지원할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됨.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개정안에 따라 수입산 농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는 주류도 “전통주”에 포함된다면, 수입산 농산물을 사용한 전통주와 국내산 농산물을 사용한 전통주에 동일한 세제감면 및 온라인판매 허용 등의 혜택을 부여할지에 대해 이견이 있을 것으로 보임.

만약, 동일한 제조자가 제조한 막걸리여도 국내산 쌀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전통주로서 세제혜택을 부여한다면, 이는 GATT⁶⁾의 내국민대우 원칙⁷⁾ 및 다자통상규범과 충돌이 있을 수 있고, 주요 무역국과의 양자 통상협안으로 대두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임.

반면, 이를 모두 전통주 범주에 포함하여, 국내산 농산물과 수입산 농산물에 동일한 혜택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국내농업인이 가격경쟁 등에서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음.⁸⁾

즉, 개정안에 대해서는 전통주의 법적 정의와 국민적 인식 간 괴리를 해소할 필요성과 함께, 전통주 및 지역특산주의 범위조정이 「주세법」상 세제감면 및 온라인판매 허용 범위와의 연계 여부에 대해 다양한

6)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7) 내국민 대우는 수입품에 대해 동종의 국내상품에 부과하는 것보다 더 높은 내국세 및 기타 과징금을 부과해서는 안 되며(GATT 제3조2항), 정부 규제에 있어서도 차별해서는 안 되며(GATT 제3조 4항), 국내 법 규제로 상품 구성성분의 일정량 또는 일정비율 이상 국산품을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것도(GATT 제3조5항) 금지(출처: 시사경제용어사전)

8) 2022년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2022.10.20.)

우려가 제기되는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정의 타당성을 논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한편, 전통주의 정의는 「전통주산업법」과 「주세법」⁹⁾에 각각 규정되어 있는데, 각 법률이 정의하는 전통주 및 지역특산주의 정의와 내용이 달라진다면 법 체계 상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세법」 개정에 대해서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¹⁰⁾

개정안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법과 국민인식의 차이 해소라는 입법 취지는 공감하나 제도 운영상 혼란 및 주종간 형평을 감안 시 범위 변경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재정경제부는 개정안과 같이 지역특산주를 전통주에서 분리할 경우 단순 지역특산주에 대해 세제·유통상 혜택을 적용할 필요성이 낮으며, 수입산 주류에 대한 차별적 과세에 따른 통상문제도 제기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개정에 신중한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9) 「주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전통주”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를 말한다.

- 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인정된 주류부문의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인정된 주류부문의 시·도무형유산 보유자가 제조하는 주류
- 나. 「식품산업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주류부문의 대한민국식품명인이 제조하는 주류
- 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어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가 직접 생산하거나 주류제조장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인접 특별자치시 또는 시·군·구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하는 주류로서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제조하는 주류

10) 또한, 2026년 6월에 「전통주산업법」(법률 제21806호)의 일부 조항(안 제4조제2항 등)이 개정되었으므로, 해당 개정사항을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그 밖에 안 제2조제3호나목 등의 일부 문구(특별자치시·군·구 → 특별자치시·시·군·구)를 체계에 맞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전통주”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개정안은 “전통주”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술에 대한 지정 절차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신설>	제8조의2(전통주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술 중 국내에서 제조되고 예로부터 전승되어 오는 원리를 계승·발전시켜 진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술을 전통주로 지정할 수 있다. 1. 「주세법」 제5조제1항제2호의 발효주류 중 탁주·약주·청주 및 과실주 2. 「주세법」 제5조제1항제3호의 증류주류 중 소주·일반증류주 및 리큐르 3. 「주세법」 제5조제1항제4호의 기타 주류 ② 제1항에 따른 전통주로 지정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현행	개정안
제33조(청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u><신 설></u> 1. (생략) 2. ~ 4. (생략)	<u>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정을 취소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u> <u>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u> <u>2. 지정된 전통주가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u> <u>④ 제3항에 따른 지정취소 및 시정명령의 세부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u> 제33조(청문) ----- ----- ----- -----. <u>1. 제8조의2제3항에 따른 전통주 지정의 취소</u> <u>1의2. (현행 제1호와 같음)</u> <u>2. ~ 4. (현행과 같음)</u>

첫째, 안 제8조의2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전통주로 지정할 수 있는 술에 대한 기준과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현행법은 “예로부터 전승되어 오는 원리를 계승·발전시켜 진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 술”을 지정하기 위한 기준 및 지정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전통주”는 아니지만 “전통주 등”에 추가로 포함되는 술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구분되어 관리되고 있지 않음.

이에 따라 각 지원대상자는 해당 지원사업별 공고를 통하여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하므로 정책의 예측가능성이 저하되고, 지원사업별로 대상이 달라진다면 지원의 일관성 및 형평성이 확보되기 어려울 수 있는 상황임.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술을 “전통주”에 포함하도록 함과 동시에, 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도록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고, 지정절차 및 지정취소에 관한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무엇이 전통주에 포함되어 이 법을 적용받고, 정부의 정책사업의 대상이 되는지를 명확하게 규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임.

둘째, 안 제33조는 전통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거치도록 규정하는 내용임.

「행정절차법」 제22조¹¹⁾는 다른 법령등에서 청문에 관한 규정을

11) 「행정절차법」 제22조(의견청취) ①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한다.
1. 다른 법령등에서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두지 아니한 경우에도 인허가 취소 등 불이익 처분을 하는 경우에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법에서 청문에 관하여 규정한다면, 불이익 처분을 하기 전에 청문을 거쳐야한다는 점을 당사자 및 행정청에게 명확히 나타낼 수 있으며, 이는 당사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유사 입법례: 「식품산업진흥법」
제33조의2(청문 등)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9조의2제4항에 따른 전문기관 지정의 취소 (이하 생략)

IV. 입법의 재정영향

한편, 개정안에 대해서는 「국회법」 제79조의2제1항에 따라 비용추계요구서가 제출된 상태로, 재정소요와 관련하여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가 첨부될 예정임(추후 관련 내용 보완 예정).¹²⁾

문 의 처
02)6788-5417

2.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처분을 하는 경우
가. 인허가 등의 취소 (이하 생략)
- 12) 국회예산정책처는 의원 또는 위원회가 요구한 비용추계에 대하여, 법안의 내용에 따라 ①비용추계서, ②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③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로 구분하여 작성·회답함. 비용추계서는 재정이 수반되고 소요 비용의 추계가 가능한 법안, 미첨부 사유서는 재정이 수반되기는 하지만 기술적으로 비용추계가 어려운 법안, 미대상 사유서는 시행되더라도 재정이 수반되지 않거나 재정부담에 변화가 없는 법안에 대하여 작성됨(국회예산정책처, 법안비용추계 이해와 실제, 2024, p.29)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통주 및 지역특산주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u>전통주</u> 등의 품질향상과 산업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경쟁력을 강화하 고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여 농업 인의 소득증대와 국가경제 발전 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u>전통주 및 지 역특산주</u> ----- ----- ----- -----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 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전통주”란 다음 각 목에 해당 하는 술을 말한다.	2. ----- -----.
가.·나. (생략)	가.·나. (현행과 같음)
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 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 법」 제3조에 따른 어업경 영체 및 생산자단체가 직접 생산하거나 제조장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특별자치 도·시·군·구(자치구를 말 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인 접 특별자치시·시·군·구	다. 국내에서 제조되고 예로부 터 전승되어 오는 원리를 계승·발전시켜 진흥이 필 요하다고 인정하여 제8조의 2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 품부장관이 지정한 술

현행	개정안
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제조한 술로서 제8조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제조면허 추천을 받아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면허를 받아 제조한 술(이하 “지역특산주”라 한다) 3. “전통주 등”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술을 말한다.	3. “지역특산주”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어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이하 “농어업경영체등”이라 한다)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한 술로서 제8조에 따라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제조면허 추천을 받아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면허를 받아 제조

현행	개정안
가. 전통주 나. 예로부터 전승되어 오는 원리를 계승·발전시켜 진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 술 4. (생략) 5. “전통주 등의 산업”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전통주를 생산하는 산업 나. 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술을 생산하는 산업 6. ~ 8. (생략)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제2장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 기반조성	한 술-----. 가. 해당 농어업경영체등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 나. 제조장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인접 특별자치시·군·구에서 생산한 농산물 4. (현행과 같음) 5. “전통주 및 지역특산주 산업”이란 전통주 및 지역특산주를 생산하는-----. <삭 제> <삭 제> 6. ~ 8. (현행과 같음)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전통주 및 지역특산주----- ----- -----. 제2장 전통주 및 지역특산주의 산업진흥 기반조성

현행	개정안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u>전통주</u> 등의 산업진흥과 건전한 술 문화 조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u>전통주</u> 등의 산업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 ----- <u>전통주 및 지역특산주</u> ----- ----- ----- <u>전통주 및 지역특산주</u> ----- -----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
1. <u>전통주</u>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기본방향	1. <u>전통주 및 지역특산주</u> ----- -----
2. <u>전통주</u> 등의 관련 기술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2. <u>전통주 및 지역특산주</u> ----- -----
3. <u>전통주</u> 등의 품질향상에 관한 사항	3. <u>전통주 및 지역특산주</u> ----- --
4. <u>전통주</u> 등의 관련 전문인력 육성에 관한 사항	4. <u>전통주 및 지역특산주</u> ----- -----
5. (생략)	5. (현행과 같음)
6. <u>전통주</u> 등의 소비 및 수출 촉진에 관한 사항	6. <u>전통주 및 지역특산주</u> ----- -----
7. (생략)	7. (현행과 같음)
③ ~ ⑥ (생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6조(지역농업과의 연계강화)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u>전통주</u> 등의 원료로 사용되는 지역생산 농산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소비촉	제6조(지역농업과의 연계강화) ① ----- ----- <u>전통주 및 지역특산주</u> ----- -----

현행	개정안
진을 위한 수급계획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생산자단체(이하 “생산자단체”라 한다)나 제17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가 <u>전통주</u> 등의 제조에 필요한 주원료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공동구매, 계약재배 등 지역농업과의 연계 강화 사업을 추진할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제조기술등의 연구개발)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문연구기관 등에 <u>전통주</u> 등의 품질향상·포장·저장·제조기술 및 제조기기 등(이하 “제조기술등”이라 한다)에 관한 연구개발을 의뢰할 수 있으며, 제조기술등의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생략) 제8조(제조면허의 추천 등) ① 시·도지사는 <u>전통주</u>를 제조하려는 자에 대하여 국세청장에게 주류제조면허를 추천할 수 있다. 다	----- -----. ② ----- ----- ----- ----- ----- -----<u>전통주 및 지역특산주</u>----- ----- ----- -----. 제7조(제조기술등의 연구개발) ① ----- -----<u>전통주 및 지역특산주</u>----- ----- ----- ----- ----- -----.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제조면허의 추천 등) ① ----- -----<u>전통주(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의 전통주에 한정한다) 및 지역특산주</u>-----

현행	개정안
만, 「주세법」 제4조제1항제1호의 주류는 제외한다. ② ~ ⑤ (생략) <u><신설></u>	----- -----.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8조의2(전통주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술 중 국내에서 제조되고 예로부터 전승되어 오는 원리를 계승·발전시켜 진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술을 전통주로 지정할 수 있다. 1. 「주세법」 제5조제1항제2호의 발효주류 중 탁주·약주·청주 및 과실주 2. 「주세법」 제5조제1항제3호의 증류주류 중 소주·일반증류주 및 리큐르 3. 「주세법」 제5조제1항제4호의 기타 주류 ② 제1항에 따른 전통주로 지정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현행	개정안
제9조(통계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u>전통주</u> 등의 산업진흥에 필요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술 관련 생산·유통·소비 등에 관한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통계를 작성할 때에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정을 취소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 ④ (생략)	1. <u>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u>
제3장 <u>전통주</u> 등의 산업 활성화 촉진	2. <u>지정된 전통주가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u>
제10조(연구·시험사업 등의 추진) <u>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통주 등의 제조용 원료작물의 품종 개발</u>	④ <u>제3항에 따른 지정취소 및 시정명령의 세부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u>
	제9조(통계조사) ① ----- ----- <u>전통주 및 지역특산주</u> ----- ----- ----- ----- -----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장 <u>전통주 및 지역특산주</u> 의 산업 활성화 촉진
	제10조(연구·시험사업 등의 추진) <u>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통주 및 지역특산주</u> -----

현행	개정안
과 품질 개선 등을 위한 연구·시험, 전통주의 복원, 원료생산 농업인 및 제조 관련 종사자의 교육훈련 실시, <u>경영컨설팅 등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을 위한 시책</u> 을 추진할 수 있다.	----- ----- ----- ----- <u>경영컨설팅 등 전통주 및 지역특산주</u> ----- -----.
제11조(교육훈련)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을 위하여 제조기술등의 보급·전수, 건전한 술 문화 조성을 위하여 소비자 또는 관련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직접 또는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교육훈련) ① ----- ----- ----- <u>및 지역특산주의</u> ----- ----- ----- -----.
② ~ ⑤ (생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2조(전문인력 양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통주 등의 산업활성화를 위한 제조기술등과 술과 조화로운 식문화 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제12조(전문인력 양성) ① ----- ----- <u>전통주 및 지역특산주</u> ----- ----- ----- -----.
② ~ ⑤ (생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3조(홍보전시 또는 교육관 설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u>전통주</u> 등의 홍보, 산업 활성화 및 전통적인 제조방법을 장려하기 위하	제13조(홍보전시 또는 교육관 설치) ----- ----- <u>전통주 및 지역특산주</u> ----- -----

현행	개정안
여 홍보전시나 교육관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유통센터 등의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u>전통주</u> 등의 포장·규격출하 및 홍보·판매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유통센터 또는 전문판매점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단체의 설립) ① <u>전통주</u> 등의 산업진흥 업무와 관계되는 자는 술과 식문화의 조화 및 건전한 술 문화 보급, <u>전통주</u>의 계승·발전 및 품질향상, 지역농업과 연계한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제17조의2(자조금의 적립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7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단체가 <u>전통주</u> 등의 판로확대, 수급조절 및 품질	----- ----- ----- ----- ---. 제14조(유통센터 등의 지원) ----- -----<u>전통주 및 지역특산주</u>----- ----- ----- ----- ----- -----. 제17조(단체의 설립) ① <u>전통주 및 지역특산주</u>----- ----- -----<u>전통주 및 지역특산주</u>----- ----- ----- -----.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7조의2(자조금의 적립지원) ① - ----- -----<u>전통주 및 지역특산주</u>-----

현행	개정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조금을 조성·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생략) 제31조(인증표시가 된 <u>전통주</u>의 우선구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u>전통주</u>를 구매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품질인증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32조(자료제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u>전통주</u> 등의 제조업자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자금지원과 품질인증을 위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33조(청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1. (생략)	----- ----- ----- -----. ② (현행과 같음) 제31조(인증표시가 된 <u>전통주 및 지역특산주</u>의 우선구매) ----- ----- ----- -----<u>전통주 또는 지역특산주</u>----- ----- -----. 제32조(자료제출) ----- -----<u>전통주 및 지역특산주</u>----- ----- ----- ----- -----. 제33조(청문) ----- ----- ----- -----. 1. <u>제8조의2제3항에 따른 전통주 지정의 취소</u> <u>1의2.</u> (현행 제1호와 같음)

현행	개정안
2. ~ 4. (생략)	2. ~ 4. (현행과 같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주류면허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9호다목 중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전통주 및 지역특산주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주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다목 중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전통주 및 지역특산주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